

| | | | | | |
|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기금운용심의회 규정</h2> | 문서번호 | 5-1-41 | | |
| | | 제정일 | 2019. 01. 10. | | |
| | | 개정일 | 2022. 02. 18. | | |
| | | 페이지 | 1/2 | 관리 부서 | 기획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기금”이라 함은 교육시설의 신축·증축 및 개수(改修)·보수(補修),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적립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매 회계연도 「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」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과 기획팀장을 각각 교원 및 직원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② 위원은 교원·직원 및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인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 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
 2. 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
 3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참석 위원 중 3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제8조(사무) ① 심의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- ② 심의회에는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처 직원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| <h2>기금운용심의회 규정</h2> | 문서번호 | 5-1-41 | | |
| | | 제정일 | 2019. 01. 10. | | |
| | | 개정일 | 2022. 02. 18. | | |
| | | 페이지 | 2/2 | 관리 부서 | 기획처 |

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